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1. 1. 26. 시행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 업무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함(안 제6조)
- 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등 거부에 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 금액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함(별표 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9호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호	300	500	1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호	300	500	10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법 제63조 제1항제3호	300	500	1000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3호 의2	300	500	10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4호	300	500	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 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6호	300	50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라 <u>아동학대전담공무원</u> 및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 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 <u>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u> <u>관리</u>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아동학대전담공무원</u>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 항	5. ----- <u>아동학대전담공무원,</u> <u>사법경찰관리</u> ----- -----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생 략)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생 략)
19. 법 제55조에 따른 <u>아동학대</u> <u>전담공무원</u> 및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9. ----- <u>아동학대</u> <u>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연 락 처	(02) 2110 - 4461